

의안번호	제647호
의결 연월일	2024년 7월 22일 (제419회)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7월 11일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7월 11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

2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'외국인정책추진단'을 추가함(안 제30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2. 정책복지위원회

- 가. 양성평등가족정책관, 외국인정책추진단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교,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양성평등가족정책관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교,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(생 략)</p> <p>6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, 외국인정책추진단, 기획관리실,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3조의2(보좌기관) ① (생략)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,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및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둔다.

제6조의2(외국인정책추진단) 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.

1. 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
2.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
3.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
4.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
5. 외국인 근로자 지원
6.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
7.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
8.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9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
10. K-유학생 업무 총괄
11. 그 밖에 외국인·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